<訓民正音>과 <諺文字母>의 비교 분석

정 우 영 (鄭宇永. 동국대 명예교수)
wooy7351@hanmail.net

1. 서론

국가의 공식기록인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韓民族의 대표적 文化象徵 '한글'은, 1443년 12월 世宗이 친히 '諺文(是謂訓民正音)'을 創制하고, 이를 더 깊이 연구하여 '訓民正音'으로 확대・개편, 1446년 9월 鄭麟趾를 포함한 8명의 학자와 함께 『訓民正音』 解例本으로 체계화해 간행 배포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頒布].

현재 학계에 알려진 '한글'의 문자체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446년 9월에 나온 『訓民正音』 해례본의 앞부분에 실린 世宗의 <훈민정음(訓民正音)> 규정 텍스트요, 또 다른 하나는 1527년 崔世珍의 『訓蒙字會』 凡例에 실려 있는 <언문자모(諺文字母)> 규정 텍스트다. 전자는 訓民正音 硏究史에서 1940년에 발견・소개되어 지금까지 50여 건에 달하는 단행본 번역・연구서가 출간되었을 정도로 텍스트 분석이 끝났다고 할 정도다. 그러나 후자는 두 문자체계 간의 상관관계나 역사적 계승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전자에 비해 텍스트 구조는 물론이고 著者나 著作年代조차 합의되지 않은 채로 새로운 조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텍스트를 '訓民正音通史' 또는 '한국문자 발달사'에 편입, 올바르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正體를 밝히려는 학계의 긍정적 노력이 요구된다.[1)]

이 글의 연구대상 중 하나인 <諺文字母> 텍스트는, 1527년 崔世珍의 『訓蒙字會』 범례에 실려 있으며, '諺文'의 字母規定과 運用規定이 제시된 3張(6쪽) 분량의 간략한 문서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한글 學習敎材로 20세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으나, 그것의 原著者와 著作年代조차 통설이 없을 정도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 또한 '한글'의 한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1446년 <訓民正音>과는 달리 연구에서 극명한 홀대를 받고 있다.

『訓民正音』 해례본(1446)의 '正音篇'은 言語의 '訓民正音' 文字化에 필요한 核心要素가 완전하게 체계화된 자료로 알려져 있다.[2)] '세종서문'을 제외하면 字母규정과 運用규정으로 나누어 조직화한 핵심 규정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는 세종의 글로서 해례본의 본문에 해당하는데, ① 世宗序文, ② 字母規定, ③ 運用規定의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사진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사진 1] 『訓民正音』 해례본(1446.9.)의 '正音篇' 모습[3)]

---

1) 대외적으로 '한글'(諺文/訓民正音)은, 1443년 12월에 조선 제4대 임금 世宗이 창제하여 1446년 『訓民正音』 解例本의 완성과 함께 頒布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글자모'와 관련해,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어느 外國人이 '한글'의 子音字와 母音字의 명칭이나 배열순서가 언제 누구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는지 질문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訓民正音>처럼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2) 종래에는 이를 '예의편(例義篇)'이라 불러왔으나, 여기서는 판심서명을 기준으로 '정음편(正音篇)'이라 부른다. 해례본의 핵심인 '訓民正音' 규정에 '世宗序文'을 붙인 글[자료]이라는 의미로 '訓民正音篇'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약칭한다. 해례본의 후반부인 '正音解例篇'도 마찬가지다.

3) 여기 해례본 사진은 한글학회(1997) 복원본이다. 이것의 原本은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본인데(줄여서 '간송본'), 1940년 '정음편'의 일부[正音 1~2장]가 낙장인 채 발견되어 再構・補修한 것을, 후에 일부 오류를 한글

③ 運用規定	② 字母規定 (初・中・終聲)	① 世宗序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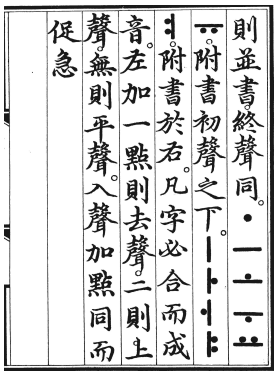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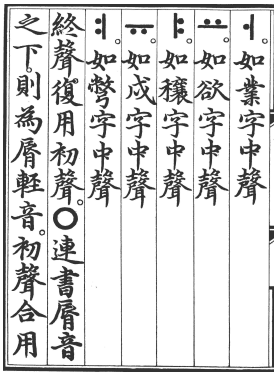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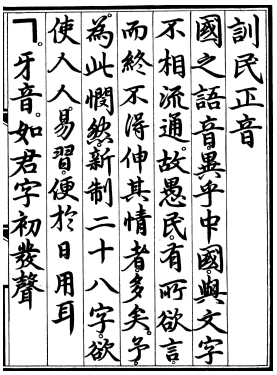
<正音 4ㄱ>	<正音 3ㄴ>	<正音 1ㄱ>

이 ‘정음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世宗序文’에는 세종의 ‘訓民正音’ 創制 趣旨가, ② ‘字母規定’에는 문자 ‘訓民正音’ 초・중・종성의 字母 目錄과 音價 등이 제시돼 있다. ③ ‘運用規定’에는 앞의 ‘字母規定’을 토대로, 言語를 문자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됐는데, ‘종성법’에서 ‘가점법’까지 모두 6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정우영 2014나).

<諺文字母>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려면, 완벽하게 짜여진 <訓民正音> 텍스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正道다. 두 텍스트를 균형 있게 견주기 위해 ‘정음편’에서 ‘세종서문’은 빼고, 字母規定과 運用規定만을 <표 1>과 같이 묶어 “<訓民正音> 규정 텍스트”로 정한다.

<표 1> <訓民正音> 텍스트의 구조

대상	<訓民正音> 텍스트								
構成內容	字母規定			運用規定					
	初聲	中聲	終聲	終聲法	連書法	竝書法	附書法	成音法	加點法

한편, 『訓蒙字會』(1527) 범례의 <諺文字母>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체계 면에서 <訓民正音> 텍스트와 사뭇 다르다는 것만 확인・기술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대체로 <諺文字母>가 <訓民正音>과 系統的 DNA가 같고 상관관계는 상호 긴밀하지만, 원저자와 그 연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4] 그러나 이와는 달리 <諺文字母>를

학회(1997)에서 수정해 복원한 것이다. 張次의 앞・뒷면은 각각 ‘ㄱ・ㄴ’으로 표시한다. 이하 모두 같다.

4) <諺文字母> 연구사를 살펴보면, 두 텍스트가 실린 出典의 刊行年度(1446년 해례본, 1527년 訓蒙字會)를 각 텍스트의 저작연대로 전제해놓고, <訓民正音>에서 <諺文字母>로의 變遷史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설은, <諺文字母>는 해례본보다는 늦게 訓蒙字會(1527)보다는 앞선 시기에, 누군가에 의해 정리되어 民間에 通用/流通되던 자료를 최세진이 기록으로 남긴 자료라는 것이다. 문제는 <諺文字母>의 내적체계 분석과 규정의 변화원인, 訓民正音과 관련된 韻書 편찬 내용, 각종 국어사자료 표기법의 면밀한 검토 등을 종합하여 연보

집중적으로 분석해 그 체계 및 구조에 관한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밝힌 연구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동림(1973, 1975, 1993)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며, 근래 강창석(2014)에서는 선행연구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결론은 전자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諺文字母>가 바로 해례본의 <정인지서>에 나오는 "略揭例義"이며, 작성 시기는『世宗實錄』(1443.12.30.)에서 "이달에 상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으니…(중략)…이를 '訓民正音'이라 일컬었다."는 기사에 나오는 그때 그 자료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강창석(2014)의 발표 7년이 되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학계의 긍정적 반응은 거의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諺文字母>는 이 땅의 민중들이 반천 년 동안 적용해 온 한글 사용의 기록을 남겼으며, 字母・運用 규정의 상관관계가 밀접하다는 점에서, 둘은 그 원천이 같을 개연성이 크다. 두 규정의 비교 분석 과정에서 <諺文字母>의 正體를 밝힐 결정적 단서들이 해당 텍스트에 내장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도 학계에는 해례본(1446.9.)에 실린 <訓民正音> 텍스트가 <정인지서>에서 언급한 "약게예의(略揭例義)"와 동일하다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1443년 12월 '諺文' 창제에서 1446년 해례본 완성될 때까지 國語學史的 사업의 年譜만 작성해 봐도 같은 것이 아님을 단박에 알 수 있다. <訓民正音>은, '諺文' 창제 후 2년 반 이상의 연구를 거쳐 1446년 9월 정인지 등 8명의 학자가 '詳加解釋'하여 완벽한 체계를 갖춰 해례본에 실은 공시문이다.

이 글은 우리 학계에 잘 알려진 '한글'의 두 체계 <訓民正音>과 <諺文字母>를 대상으로 하여 그 구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규정의 內的體系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1446년 9월의 <訓民正音> 텍스트와, 작성(/제정) 시기가 불분명한 訓蒙字會(1527) 범례의 <諺文字母> 텍스트 간에 先後 영향관계와 原著者 및 著作年代를 추정해보고, 그것의 國語學史上의 座標를 설정하고자 한다.

두 자료의 先後 상관・영향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연구대상 자료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1443년 12월 '略揭例義'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1446년의 <訓民正音> 텍스트를 比較의 中心軸으로 삼아, <諺文字母> 텍스트의 구조와 그 內容(構成要素)을 분석함으로써 두 문자체계간 상관관계와 영향관계를 밝힌다.[5)]

이를 위해 이 글은 전체를 4장으로 구성한다. <訓民正音> 텍스트의 핵심이 '字母規定'과 '運用規定'에 있으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諺文字母>를 분석・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제2장에서는 '字母規定'을 初聲・中聲・終聲 規定의 3절로 나누어 體系內的 構造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運用規定'으로, 終聲法・連書法・竝書法・附書法・成音法・加點法 등 모두 6절로 나누어 그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2. 자모규정(字母規定)의 구조 분석

'한글'의 두 체계에 관한 문헌의 공식적 기록은 다음과 같다.

(1) 世宗實錄(1443. 12. 30.)에 의하면,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諺文) 28자를 창제하

를 작성하거나 다양하게 검토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5) 訓蒙字會(1527) 범례의 <諺文字母>만 가지고 보면 한글字母의 字形이 다르다. 예컨대, 1443년 12월의 "略揭例義"의 한글 중성 자형이 'ㅏㅑㅓㅕ'였는지 'ㅏㅑㅓㅕ'였는지 알 수 없다. 1446년 9월의 <訓民正音>으로부터 계산해도 이미 80년이나 지난 데다, 이것이 활자본 자료라 原典의 모습이 많이 변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글자모의 字形 비교로써 저작시기가 후대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거의 변화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規定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셨으니, 그(=언문) 글자는…(中略)…초·중·종성으로 나누어지며, 합한 연후에야 글자가 이루어진다[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下略)"라고 하였고, (2) 解例本(1446.9.)에는 "訓民正音…新制二十八字…(中略)…무릇 글자는 (초·중·종성이) 합해져야 소리가 이루어진다[凡字必合而成音。]"라고 하였다. 이것은 '諺文'이든 '訓民正音'이든 言語를 音節(/字節) 단위로 모아서 文字化하되, 그 구성요소는 초성・중성・종성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개의 규정 텍스트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3개의 규정(初聲・中聲・終聲)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검토한다.[6]

2.1. 初聲規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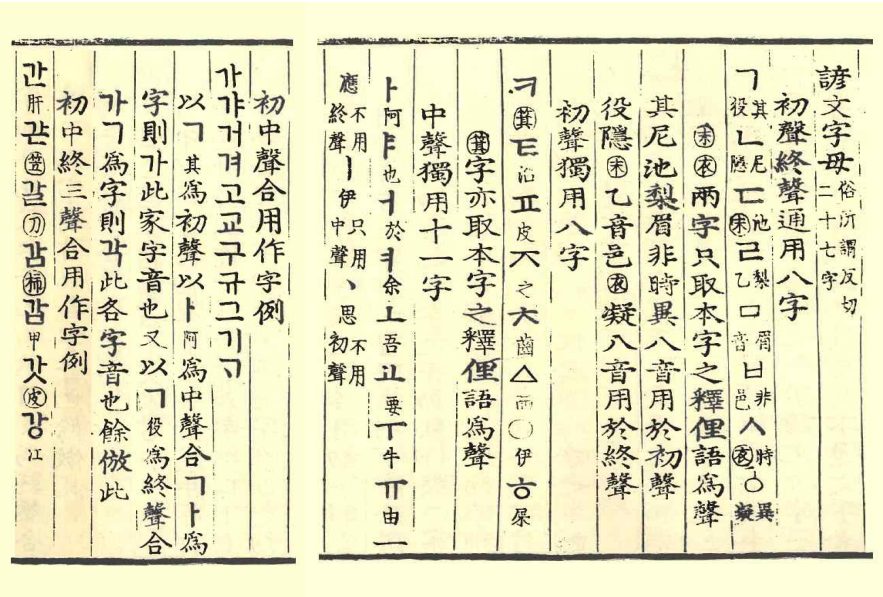
諺文字母 俗所謂反切 二十七字
初聲終聲通用八字
ㄱ其役 ㄴ尼隱 ㄷ池(末) ㄹ梨乙 ㅁ眉音 ㅂ非邑 ㅅ時(衣) ㅇ異凝
(末)(衣)兩字只取本字之釋�語爲聲
其尼池梨眉非時異八音用於初聲
役隱(末)乙音邑(衣)凝八音用於終聲
初聲獨用八字
ㅋ(其) ㅌ(池) ㅍ(皮) ㅈ之 ㅊ大齒 ㅿ而 ㅇ伊 ㅎ屋
(其)字亦取本字之釋俗語爲聲
中聲獨用十一字
ㅏ阿 ㅑ也 ㅓ於 ㅕ余 ㅗ吾 ㅛ要 ㅜ牛 ㅠ由 ㅡ應(不用)終聲 ㅣ伊(只用)中聲 ㆍ思(不用)初聲
初中聲合用作字例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ㄱ
以ㄱ其爲初聲以ㅏ阿爲中聲合ㄱㅏ爲字則가此家字音也又以ㄱ役爲終聲合가ㄱ爲字則각此各字音也餘倣此
初中終三聲合用作字例
간(肝) 갇(透)(勿) 감(柿)(甲) 갓(皮) 강(江)

[사진 2] <諺文字母>의 字母規定_<訓蒙字會凡例 2ㄴ~3ㄴ>

<訓民正音>과 <諺文字母>와 初聲規定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텍스트 (字母數)	初聲規定의 內容	비고
訓民正音 (23자모)	① 牙音: ㄱ/君 (ㄲ)/虯 ㅋ/快 ㆁ/業 ② 舌音: ㄷ/斗 (ㄸ)/覃 ㅌ/呑 ㄴ/那 ③ 脣音: ㅂ/彆 (ㅃ)/步 ㅍ/漂 ㅁ/彌 ④ 齒音: ㅈ/卽 (ㅉ)/慈 ㅊ/侵 ㅅ/戌 (ㅆ)/邪 ⑤ 喉音: ㆆ/挹 ㅎ初聲/虛 (ㆅ)/洪 ㅇ/欲 ⑥ 半舌音: ㄹ/閭 ⑦ 半齒音 ㅿ/穰 ① ㄱ。牙音。如君字初發聲 <正音1ㄱ> ② 竝書◦如虯字初發聲 <正音1ㄴ>	漢字字母 '虯覃步慈邪洪'에 대응되는 한글자모 'ㄲㄸㅃㅉㅆㆅ'(全濁)은 제시되지 않음. '세종서문'의 "新制二十八字" 제약 때문임.
諺文字母 (16자모)	① 初聲終聲通用八字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는 여덟 자) ㄱ 其役 / ㄴ 尼隱 / ㄷ 池(末) / ㄹ 梨乙 / ㅁ 眉音 / ㅂ 非邑 / ㅅ 時(衣) / ㅇ 異凝	

6) 이하 본문에서는 편의상 '규정 텍스트'를 빼고 다음과 같이 부른다. 예) <諺文字母> 텍스트 → <諺文字母>.

	其尼池梨眉非時異八音 用於初聲 【기니디리미비시이 8음은 초성에 쓴다.】	
	② 初聲獨用八字 [초성에만 쓰는 여덟 자] ㅋ(箕) ㅌ治 ㅍ皮 ㅈ之 ㅊ齒 ㅿ而 ㅇ伊 ㅎ屎 【ㅋ(箕)**키** ㅌ治티 ㅍ皮**피** ㅈ之**지** ㅊ齒**치** ㅿ而**ᄉᆡ** ㅇ伊이 ㅎ屎히】	(箕)는 우리말 새김 (키)로 종성을 삼음

<訓民正音>의 初聲字母는 모두 23字母로, 그 순서는 ① 七音(牙舌脣齒喉·半舌·半齒音)과 ② 淸濁(全淸/全濁/次淸/不淸不濁)을 기준으로 排列되어 있다.[7] 다만, 喉音의 경우는 淸濁의 순서가 '全淸-次淸-全濁-不淸不濁' 순으로 배열되었다. 漢字字母 23자는 모두 韻書(후에 '東國正韻')의 字母字들이다.[8] 이 <訓民正音> 規定텍스트를 분석하면 表記하고자 하는 對象과 範圍가 고유어[俚語]는 물론이고[9] 改新漢字音[文字]까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諺文字母>에 제시된 初聲字母의 總數는 16字이다. 그것은 ① 初聲終聲通用八字 'ㄱㄴㄷㄹㅁㅂㅅㅇ'과 ② 初聲獨用八字 'ㅋㅌㅍㅈㅊㅿㅇㅎ'이다. 이들이 각각 初聲音韻이라는 사실은 漢字字母 "其기(그것)-尼니(스님)-池디(연못)…伊이(저것)-屎히(끙끙앓다)" 등을 통해 置換檢證, 最小對立雙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들 'ㄱ~ㅎ' 16字母 모두가 初聲音韻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ㅇ'은 [異이]이므로 漢字音 初聲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목할 것은, 이들 한자자모의 漢字音이 모두 韓國漢字音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규정으로 표기하려는 대상과 범위는 고유어[本國俚語]와 고유어 音韻體系로 동화된 대로의 漢字~漢文[文字]까지임을 말해준다. 여기에 喉音 'ㆆ'과 全濁音(ㄲㄸㅃ…ㆅ)이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諺文字母>의 著作年代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初聲 排列은 ① 初聲終聲通用八字, ② 初聲獨用八字 순서로 되어 있다. 이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그 배열절차가 드러난다. ㉮ 五音(牙/舌/脣/齒/喉音)의 순서에 따라 초성자모 16자를 각각 制字한 순서대로 늘어놓는다. ㉯ 그 목록은 각각 制字之始 → 1次(因聲加畫字) → 2次(非因聲加畫字) 순으로 배열한다. ㉰ 그런 바탕 위에서 ① 初聲終聲通用八字(8자) → ② 初聲獨用八字(8자)를 뽑아서 그대로 初聲字母[자음자]의 순서로 정한 것이다.

訓民正音 初聲의 制字原理를 파악하려면, 해례본(1446)의 <制字解>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지만, 이와 같은 배열순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 <諺文字母> 텍스트를 분석해보면 그 순서가 명확함에 놀란다. 이것은 이 텍스트의 初聲 排列順序를 작성한 사람이 곧 이 규정텍스트의 著者일 가능성이 크다는 강력한 증거라 하겠다.

---

7) 全濁音(ㄲㄸㅃㅉㅆㆅ)도 23初聲音韻 중 하나가 분명하다. 그러나 訓民正音의 公示文 가운데 '世宗序文'에서 "新制二十八字"(초성 17자+중성 11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制約으로 한글의 字形은 노출하지 않은 대신 규정문 "ㄲ.牙音." 부분을 "(ㄱ를)竝書◦(하면)"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訓民正音>은 文字論的 層位의 "新制28자(初聲凡17자)"와 音韻論的 층위의 34字母(全濁音 初聲6字母 포함)를 이 규정에 입체적으로 제시한 公示文이다. 이에 대하여는 정우영(2018) 참조.

8) ① "정음의 초성은 즉 운서(후에 '東國正韻')의 자모이다. 말소리가 이로부터 비롯되므로 이르기를 '모(母)'라고 한다."[正音初聲◦則韻書之字母也。音由此而生◦故曰母。]<正音解例14ㄴ>. ② "ㄱㅋㄲㅇ은 그 소리가 아음이요…(중략)…23자가 첫소리가 되니, 만 가지 소리가 모두 이로부터 나오도다."[君快虯業其聲牙…(중략)…二十三字是爲母 萬聲生生皆自此]<正音解例15ㄴ>. 初聲의 淸濁 배열순서가 '正音篇'과 '正音解例篇'이 서로 다른 원인에 대하여는 정우영(2014나, 2018) 참조.

9) 表記 對象과 範圍가 "固有語는 물론이고"라고 한 것은 해례본의 두 序文과 五解, 一例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와 함께 <諺文字母> 텍스트의 著者를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 이른바 옛이응 'ㆁ'[ŋ]을 牙音이 아니라 喉音에서 制字한 것과 관련된 문제다. 이에 대해 <諺文字母>의 著者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오직 'ㆁ'의 초성은 속간(俗間)에서 'ㅇ'자의 음과 서로 비슷하게 발음하므로[俗呼相近], 속간에서 (ㆁ을) 초성으로 쓰면 모두 'ㅇ'음으로 사용한다. 만약 위의 글자[上字/앞글자/선행음절]에 'ㆁ'음 종성이 있으면 아래 글자[下字/뒷글자/후행음절]에 반드시 'ㆁ'음을 써야 초성이 된다. 'ㆁ'자의 음은 코를 움직여 소리를 내며[動鼻作聲], 'ㅇ'자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오되 가볍고 빈(허한) 소리일[輕虛之聲] 뿐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ㆁ'과 'ㅇ'소리로) 비록 조금(약간) 다르지만 대체로 서로 비슷하다[相似]. 한음(중국어음)에서 'ㆁ'음 초성은 혹은 '尼'(ㄴ)음에 귀속되거나, 혹은 'ㆁ'과 'ㅇ'가 서로 섞이어 구별이 없다[相混無別]."[10] (밑줄은 필자)

위의 해설 내용을 살펴보면, <諺文字母>의 原著者는 'ㆁ'(옛이응)이 韻書에서 牙音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韓國語의 音韻 특성상 'ㆁ'[ŋ]음이 語頭初聲[字母]에서는 발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와 音聲的으로 유사한 喉音(制字之始 'ㅇ')에서 加畫・制字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해례본(1446)에도 들어 있어 주목된다. <制字解> 내용과 대조해보면, <諺文字母>의 "動鼻作聲"[코를 움직여 소리를 낸다] ⇒ "聲氣出鼻"[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온다]와 같이, 非專門的이고 소박한(투박한) 설명이 <制字解>에 와서는 專門家的인 聲韻學的 解說로 格上・調整・潤色된 것으로 이해된다.

만약 이것이 逆順으로 진행됐다면, 비상식적이고 부자연스러워 그렇게 만든 의도가 어디에 있을지 이해하기 어렵다. 해례본을 참고해 <諺文字母>를 만들었다는 통설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이런 사실은 <諺文字母>의 著作年代가 해례본(1446)보다 앞설 뿐 아니라 'ㆁ'(옛이응)을 制字한 사람이 곧 <諺文字母>의 著者일 가능성이 높은 증거라 하겠다.

이와 함께, <諺文字母>에서 "(漢音에서)…혹은 'ㆁ'과 'ㅇ'가 서로 섞이어 구별이 없다[相混無別]"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이를 <訓民正音> 텍스트에서는 "疑與喩多相混用"이라 하여, 中國語에서 韻書音들이 변화해 疑母(ㆁ)와 喩母(ㅇ)가 서로 배열상 혼동되었다는 中國音韻史的 해설까지 덧붙여 놓았다. 'ㆁ'을 喉音(ㅇ)에서 制字한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불가피했다는 점을 여러 이유를 들어 적극 代辯하고 補充 解說까지 붙여 옹호하고 있다.[11]

특히 두 텍스트를 비교해보면, <諺文字母>에 비해 <訓民正音>의 初聲 排列順序는 韻書體系를 따랐음이 분명하다. <諺文字母>의 이와 같은 부가적 설명은 그것이 東國正韻 편찬 시작(1444.2.16.) 이전에 만들어졌으며, 著作의 主體가 정인지보다 상위자, 즉 군왕[世宗]이라는, 결정적이며 확증할 만한 증거로 보인다. 통설대로 <諺文字母>가 <訓民正音>을 참고해

---

10) "唯ㆁ之初聲與ㅇ字音俗呼相近 故俗用初聲則皆用ㅇ音 若上字有ㆁ音終聲則下字必用ㆁ音爲初聲也 ㆁ字之音 動鼻作聲 ㅇ字之音 發爲喉中輕虛之聲而已 故初雖稍異而大體相似也 漢音ㆁ音初聲 或歸於尼音 或ㆁㅇ相混無別" <訓蒙字會凡例3ㄴ>

11) 오직 아음의 ㆁ(옛이응)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서 코로 소리 기운이 나가지만 ㆁ 소리는 ㅇ와과 비슷해서 운서에서도 ㆁ[疑]과 ㅇ[喩]가 많이 혼용된다. 이제 또한 ㆁ을 목구멍을 본떠 만들었으나 아음 글자를 만드는 데에는 시초로 삼지는 않았다. 대개 목구멍은 물에 속하고 어금니는 나무에 속하는 까닭에 ㆁ은 비록 어금니에 속해 있으면서도 ㅇ와 비슷하여 마치 나무의 싹이 물에서 나와 부드럽고 여려 아직도 물기운이 많은 것과 같다.[唯牙之ㆁ。雖舌根閉喉聲氣出鼻。而其聲與ㅇ相似。故韻書疑與喩多相混用。今亦取象於喉。而不爲牙音制字之始。盖喉屬水而牙屬木。ㆁ雖在牙而與ㅇ相似。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尙多水氣也。]<正音解例3ㄴ-4ㄱ>

정리한 것이라면, 해례본 <制字解>의 "설근폐후 성기출비(舌根閉喉 聲氣出鼻)" 같은 전문적 설명을 인용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여기서는 그보다 격이 떨어지는 투박한 설명 "동비작성(動鼻作聲)"이라 표현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諺文字母>는 <訓民正音>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며, 그보다 이른 시기 1443년 12월의 "略揭例義"일 가능성이 크고, 그 著作의 主體도 世宗일 것이라는 추정이 온당해 보인다.

이상 <訓民正音>과 <諺文字母>의 初聲規定 비교・분석에서 드러난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텍스트 모두 고유어와 漢字[文字及本國俚語]를 대상으로 그 語音 표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訓民正音>은 고유어는 물론이고 改新漢字音(후에 '東國正韻음')까지를 포괄해 正音(표준음)으로 적는 데 비해, <諺文字母>는 고유어와 고유어 음운체계로 동화된 한자음으로 적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둘째, <訓民正音>의 初聲은 23자모를 七音・淸濁을 기준으로 하여 初聲字母를 배열하였다. 이에 비해 <諺文字母>의 初聲은 五音을 기준으로 "制字之始 ⇒ 1次(因聲加畫字) ⇒ 2次(非因聲加畫字)" 순서로 制字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2가지 기준에 따라 初聲字母를 배열하였다. 역사적으로 '五音 ⇒ 七音'으로 분화되었고, <訓民正音>과 긴밀한 韻書인 東國正韻의 편찬 저본 古今韻會擧要가 '七音'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諺文字母>는 東國正韻 編纂(1444.2.16.~1447.9.) 이전, 1446년 9월 <訓民正音>보다 훨씬 앞서서 만들어진 체계로 추정된다.

셋째, <訓民正音>에서 初聲字母 淸濁 분류기준은 '全淸/全濁/次淸/不淸不濁'이지만, <諺文字母>는 그중에서 全濁系列이 빠져 있다. 全濁系列의 制定은 東國正韻 편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諺文字母>는 '韻書' 편찬 완료(1447.9.) 以前의 체계일 것으로 추정된다.

2.2. 中聲規定

텍스트 (字母數)	中聲規定의 內容	비고
訓民正音 (11자모)	・/呑 ㅡ/卽 ㅣ/侵 ㅗ/洪 ㅏ/覃 ㅜ/君 ㅓ/業 ㅛ/欲 ㅑ/穰 ㅠ/戌 ㅕ/彆 cf. ・。如呑字中聲。ㅡ。如卽字中聲。(나머지도 이와 같음)	制字之始-初出-再出字
諺文字母 (11자모)	中聲獨用十一字 [중성에만 쓰는 11자] ㅏ阿 ㅑ也 ㅓ於 ㅕ余 ㅗ吾 ㅛ要 ㅜ牛 ㅠ由 ㅡ應 不用終聲 ㅣ伊 只用中聲 ㅅ思 不用初聲 <범례 3ㄱ>	장구(張口)-축구(縮口)-制字之始
	【풀이】ㅏ(阿아), ㅑ(也야), ㅓ(於어), ㅕ(余여), ㅗ(吾오), ㅛ(要요), ㅜ(牛우) ㅠ(由유), ㅡ(應응) 應(응)에서 받침은 쓰지 않음. ㅣ(伊이)중성만 씀[只用中聲] ㅅ(思ㅅ) '思(ㅅ)'에서 초성은 쓰지 않음.	

<訓民正音>의 중성 배열순서는 해례본의 <制字解>에서 밝힌 대로 "中聲凡十一字"의 제자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즉 制字之始의 天地人(・ㅡㅣ)에 이어 初出字(ㅗㅏㅜㅓ), 그리고 再出字(ㅛㅑㅠㅕ)의 순이며, 'ㅣ'를 제외한 10자는 陰陽・圓平 對立(・:ㅡ, ㅗㅏ:ㅜㅓ)을 기준으로 하여 배열되었다. 이때 中聲 음가를 대표하는 漢字字母들은 모두 韻書(후에 '東國正韻')의 한자자모를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한자자모 하나로 中聲은 물론이고 初聲・終聲 설명까지 2중, 3중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특이하다.[12] <訓民正音> 텍스트는 性理學的 기준과 制

定者가 세운 특별한 기준에 따라 완벽하게 체계화・조직화되어 있다.

한편, <諺文字母>는 “中聲獨用十一字”에 해당하는 한글자모와 漢字字母를 함께 제시했다. 漢字字母는 한국 전통한자음을 기준으로 해당 음을 나타내는 漢字를 택해 漢字字母로 삼았다. 이 규정에서는 고유어 音韻體系에 동화된 대로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天地人 三才를 제외한 中聲 8字는 張口[ㅏㅑㅓㅕ]와 縮口[ㅗㅛㅜㅠ]를 기준으로 분류한 후에,[13] 그 안에서 다시 初出・再出字[ㅏㅑㅓㅕ, ㅗㅛㅜㅠ] 순서로 배열하고, 그 뒤에 中聲의 制字之始인 三才를 地人天(ㅡㅣㆍ) 순으로 배열하였다.

<訓民正音>의 中聲 制字順序는 해례본(1446) <制字解>의 해설로써 잘 알려져 있지만, <諺文字母>의 中聲은 어떤 원리로 制字하였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텍스트로는 中聲 배열순서와 기준만을 대강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世宗이 ‘訓民正音’ 28자를 만든 원리를 鄭麟趾 등이 잘 듣고 ‘詳加解釋’하여 體系化한 해설서가 『訓民正音』 해례본(1446)이므로, <諺文字母>의 中聲 制字方法도 <制字解>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諺文字母>는 그 기준이 없지는 않겠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14] <訓民正音>과 <諺文字母>는 공통적으로 11자를 기본 중성자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두 규정의 설명 방식이 다르고, 중성의 배열순서와 한자자모 등도 다르다.[15] <u>두 텍스트의 中聲規定은 體系化・規格化・理論化의 완벽성 여부에서 큰 차이가 난다</u>. 이 같은 사실로 판단할 때, <諺文字母>는 1446년 9월의 <訓民正音>보다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체계임이 분명하다.

2.3. 終聲規定

<table>
<tr><th>텍스트
(字母數)</th><th>終聲規定의 內容</th><th>비고</th></tr>
<tr><td>訓民正音
(17+@)</td><td>終聲復°用初聲。<正音3ㄴ>[16]</td><td>復°(거성)
종성 제자규정</td></tr>
<tr><td>諺文字母
(8자)</td><td>初聲終聲通用八字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는 여덟 자)
<table><tr><td>ㄱ</td><td>其
役</td><td>ㄴ</td><td>尼
隱</td><td>ㄷ</td><td>池
(末)</td><td>ㄹ</td><td>梨
乙</td><td>ㅁ</td><td>眉
音</td><td>ㅂ</td><td>非
邑</td><td>ㅅ</td><td>時
(衣)</td><td>ㆁ</td><td>異
凝</td></tr></table></td><td>(末)(衣)는 우리말 새김 (귿)(옷)으로 종성을 삼음</td></tr>
</table>

字母規定의 ‘終聲規定’에는 初聲・中聲規定처럼 終聲字의 한글자형과 終聲의 音價를 대표하는 漢字字母[卽君…등]가 제시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완벽한 체계를 갖추었다는 <訓民正音>에서도 그 과정은 생략되고 “終聲復用初聲”이라는 6자의 規定文으로 대체되었다. 簡潔

12) 구체적으로 한자자모 <卽>자를 예로 든다. ① ㅈ。齒音。如<u>卽字初發聲</u>。<正音2ㄱ>. ② ㅡ。如<u>卽字中聲</u>。<正音3ㄱ> ③ 如<u>卽字終聲</u>是ㄱ。<正音解例17ㄴ>. (밑줄은 필자)

13) 중성의 배열순서가 이와 유사한 예가 申叔舟(1417~1475)의 <四聲通攷凡例>에 보인다. “중성 가운데 ㅏㅑㅓㅕ는 입이 펴지는 글자[張口之字]들이어서 처음 발음할 때의 입이 변하지 않으며, ㅗㅛㅜㅠ는 입이 오므라드는 글자[縮口之字]들이어서 처음 발음할 때의 혀가 변하지 않는다.[如中聲ㅏㅑㅓㅕ張口之字則初聲所發之口不變, ㅗㅛㅜㅠ縮口之字則初聲所發之舌不變]<四聲通攷凡例>

14) 이동림(1993: 26-29)에서는 <皇極經世聲音唱和圖> 韻母排列 전개방식이 <諺文字母>의 中聲 排列順序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15) 설명 방식에서, <訓民正音>은 中聲 11자를 “ㆍ。如呑字中聲。”과 같은 규정문으로 표준화해 제시했다. 그러나 <諺文字母>는 한글자모에 한자자모를 “ㅏ阿 ㅑ也…”식으로 병기하였다. “略揭例義”의 모습과 더 잘 어울린다.

16) 訓民正音 언해본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乃:냉終즁ㄱ소·리·ᄂᆞᆫ 다시 ·칫소·리·ᄅᆞᆯ ·ᄡᅳᆫᄂᆞ니·라”<정음11ㄴ>.

性을 중시하다 명료성이 훼손될 소지가 없지 않은 부분이다.[17]

연구에 의하면, <訓民正音>의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은 ① 終聲規定(종성 制字규정)과 ② 終聲法(종성 表記규정) 두 機能을 겸한 重義的 규정이다(정우영 2014가나). 하나의 규정문으로 字母規定과 運用規定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자모규정에서 이 규정은 "終聲字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든) 初聲字를 다시 사용한다."는, 이른바 終聲의 制字에 관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한글자모로 제시된 初聲字가 17字라면, 기본적으로 17字를 終聲의 한글자모로 쓸 수 있고, 만약 連書法에 의해 만들어진 脣輕音(ㅸ/ㅹ/ㅱ/ㅱ)을 쓸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또한 終聲字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諺文字母>는 어떠한가? 이 텍스트에서는 종성규정만을 별도로 만들어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初聲終聲通用八字"라는 규정이 실제로는 初聲規定이면서 終聲規定까지 겸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終聲字를 8字만으로 제한했지만, '소리 나는 대로'에서 '(눈으로) 읽는 것까지'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初聲獨用八字'까지를 포함해 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의 명칭에 한글자모(자형) 하나를 "初聲과 終聲에 두루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을 뿐 아니라, 한글자모(ㄱㄴㄷㄹㅁㅂㅅㆆ)가 '初聲字=終聲字'와 같다는 것을 視覺的으로도 보여주고 있다. 이들 終聲字의 音價를 대표하는 漢字字母가 각각 "役역隱은(末귿)…應응"이더라도 初聲字로 제시된 한글자모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규정이 비록 借字표기법까지 동원해 소박하게 만든 규정이기는 하지만, 視覺化되어 있어 效率的이고 直觀的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훈민정음> 규정문보다 實用度가 높다.

거시적 관점에서, 1443년 12월 '諺文' 창제에서부터 16세기 초까지의 한글 사용의 역사에서 表記對象의 範圍가 점차 확대되어간 사실(외국어표기)을 고려할 때, 終聲字 사용의 확대(8개⇒17+@)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 반대되는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諺文字母>는 1446년 <訓民正音>보다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텍스트임이 분명하다.

3. 운용규정(運用規定)의 구조 분석

運用規定은 字母規定에서 제시한 字母(初·中·終聲)를 사용해 언어의 文字化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갖추어 놓은 규정이다. 1446년의 <訓民正音> 텍스트는 완벽한 체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 규정은 終聲法・連書法・竝書法・附書法・成音法・加點法 등 모두 6개로 구성되어 있다(정우영 2014나). 여기에 맞춰 두 체계의 구조를 분석한다.

3.1. 終聲法

텍스트 (字母數)	終聲規定의 內容	비고
訓民正音 (17+@)	終聲復°用初聲。<正音3ㄴ>	復°(거성) 종성 제자규정
諺文字母		(末)(衣)는 우리말

17) <諺文字母>의 8개 終聲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이상의 終聲字 音價를 漢文規定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규정문이 바로 "終聲復用初聲"이 아닌가 한다.

(8자)	初聲終聲通用八字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는 여덟 자)																새김 (귿)(옷)으로 종성을 삼음
	ㄱ	其 役	ㄴ	尼 隱	ㄷ	池 (末)	ㄹ	梨 乙	ㅁ	眉 音	ㅂ	非 邑	ㅅ	時 (衣)	ㆁ	異 凝	

1446년 <訓民正音>에서는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으로 ① 終聲規定과 ② 終聲法 두 가지 기능을 겸비하게끔 제정했다 하였는데, 運用規定에서는 後者(②)로서 "종성(받침)은 (만들어 쓸 수 있는 모든) 초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訓民正音 初期文獻의 고유어 표기에 쓰인 終聲(받침) 'ㅈ,ㅊ,ㅌ,ㅍ'을 비롯하여 外來語的 要素 및 外國語(다라니/중국어)의 終聲 表記에 사용된 'ㅱ/ㅸ/ㅇ/ㆆ/ㅿ' 등과 같은 표기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終聲 表記方法이 無制限的으로 확대・개방되기에 이른다. 잘 아시듯, 龍飛御天歌와 月印千江之曲은 이 終聲表記法(形態音素的 表記)의 典型的인 사례다.

'諺文'(是謂訓民正音)은 언어를 音節單位로 모아 문자화하도록 규정되었다(§3.5 참조). 이 규정은 音節 構成要素로 終聲(받침)이 있을 경우에 이를 표기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諺文字母>에는 '初聲終聲通用八字'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텍스트를 만들 당시에 固有語 및 傳統漢字音의 終聲(오늘날의 '音節末子音')의 실상을 8개로 파악하고 이처럼 규정한 것이다. 즉 표기할 대상과 범위를 고유어 音韻體系에 기반을 두고, 그 범위에서 고유어[本國俚語]와 漢字(漢字音)[文字]까지 표기하겠다는 終聲表記法인 것이다.

終聲法만 가지고 두 텍스트의 先後關係를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國語表記法의 실제 사례 몇 가지만 보아도 두 규정 제정의 先後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① 解例本의 <終聲解>에는 表記者(表記主體)의 目標에 따라 '終聲復用初聲' 규정에 따라 쓸 수도 있고, '初聲終聲通用八字' 규정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8] 또한 月印千江之曲의 終聲 表記의 校正 사례도 <訓民正音>의 '終聲復用初聲' 표기로 校正되기 이전에 적용한 終聲法이 바로 '八終聲法'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19]

1443년 12월 世宗의 '諺文(訓民正音)' 創制 이후, 16세기 초까지 한글(諺文/訓民正音)을 이용한 표기 대상의 범위(외국어표기)가 점차 확대되어간 사실로 미루어볼 때, <諺文字母>가 <訓民正音>보다 이른 시기에 나온 규정 텍스트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3.2. 連書法

텍스트	連書法 內容	비고
訓民正音	○連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正音3ㄴ>[20]	
諺文字母	音음·의 노·픈·며 <u>ᄂᆞᆺ가·오·미</u><범례4ㄱ>, <u>ᄂᆞᆺ가·온</u> 소·릐·옛 字·ᄌᆞ·ᄂᆞᆫ <범례4ㄱ>	규정 없음

<訓民正音>에는 脣輕音[입술가벼운소리]을 적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喉音 'ㅇ'를 脣音 'ㅂ/ㅃ/ㅍ/ㅁ' 아래에 이어서 'ㅸ/ㅹ/ㅻ/ㅱ'처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固有語 表記에서는 初

18) <終聲解>에서는 '엿의갗'[狐皮], '빗곶'[梨花]도 보여주면서, 이들을 '엿의갓'과 '빗곳'으로 표기해도 괜찮다고 설명하였다. 前者는 <訓民正音>의 運用規定에 제시된 "終聲復用初聲" 규정이요, 後者는 "終聲八字可足用"이지만 결과적으로는 <諺文字母>의 "初聲終聲通用八字"와 같은 규정을 따른 셈이다.

19) 이 책의 교정에 대하여는 안병희(1992: 58-62, 2009: 251-254) 및 정우영(2014가: 21-22) 참조.

20) 訓民正音 언해본에는 "○·를 입시·울쏘·리 아·래 니·어 ·쓰·면 입시·울가·비야·ᄫᆞᆫ 소·리 ᄃᆞ외ᄂᆞ·니·라" <정음12ㄱ>

聲으로 ‘ㅸ’이, 外來語的인 要素인 東國正韻 漢字音 表記에서는 ‘ㅱ’을 終聲으로, 中國語 등 外國語 表記에서는 위의 모두가 初聲과 終聲에 두루 사용되었다.

<諺文字母>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행히도 加點法(傍點조항) 규정을 諺解한 부분에서 ‘ᄂᆞᆺ가오미, ᄂᆞᆺ가온’ 등으로 표기된 예가 발견된다. 이 같은 표기가 <諺文字母>의 原典에서부터 존재했다면, 원천적으로 이 텍스트에는 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만약에 이 규정이 들어 있었다면 이들은 각각 ‘ᄂᆞᆺ가보미’와 ‘ᄂᆞᆺ가ᄒᆞᆫ’ 정도로 표기됐을 것이기 때문이다.[21]

國語表記法史에서, 脣輕音은 龍飛御天歌(1445~1447)・釋譜詳節・月印千江之曲 등 訓民正音 초기문헌에서 활발히 쓰이다가, 1461년 楞嚴經諺解(전10권)의 固有語 표기에서부터 전격적으로 폐지된다(정우영 2005). 東國正韻 漢字音에서 終聲으로 쓰이던 ‘ㅱ’마저 東國正韻 漢字音의 15세기 최후 문헌인 佛頂心陀羅尼經(1485)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쓰이지 않게 된다. 漢字音과 固有語 表記法에서는 폐지되었으나, 外國語 表記에서는 18세기까지도 굳건히 사용되었다.[22]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諺文字母>는 連書法 규정이 새로 制定되기 이전, 즉 1446년 9월 <訓民正音>보다 앞선 시기에 지어진 규정 텍스트임이 분명하다.[23] 그와 반대로 볼 경우, 외국어 표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순경음 표기의 근거규정을 없앤 이유를 언급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3.3. 竝書法

텍스트	竝書法 內容	비고
訓民正音	初聲合用則竝書。終聲同。<正音4ㄱ>[24]	초종성 합용/각자
諺文字母	곧고 ᄲᅳᆫ 소·릐 <凡例4ㄴ>. 다ᄅᆞᆫ ·ᄠᅳᆫ 다ᄅᆞᆫ 소·릐 <凡例4ㄴ>	규정은 없음
	點·뎜·이 :업·고 기·리 ·혀 :나·죵 들·티·ᄂᆞᆫ 소·릐 <訓蒙字會凡例4ㄱ>	

<訓民正音>에서 이 규정은 音節의 初聲이나 終聲에 두 개 이상의 같은 소리나 다른 소리를 합쳐 써야 할 경우에 그 구성요소를 竝書하라(=나란히 쓰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과 관련된 해설과 용례는 해례본(1446)의 <合字解>에 제시되어 있다.[25]

한편, <諺文字母>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傍點法을 諺解한 글에 이 규정에 해당하는 표기가 나타난다. <諺文字母>를 만든 사람의 暗黙知에는 들어 있지만, 아직 形式知로 규정화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諺解文의 예들을 종합해 볼 때, <諺文字母>의 著者가 생각하는 竝書法은 合用竝書는 가능하지만[ᄲᅳᆫ/ᄠᅳᆫ], 各自竝書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기리 혀].[26]

---

21) cf. 山川谿谷의 노ᄑᆞ며 ᄂᆞᆺ가ᄫᆞᆷ 이쇼미<月印釋譜13:45ㄱ>. 平뼝聲셩은 ᄆᆞᆺ ᄂᆞᆺ가ᄒᆞᆫ 소리라<정음14ㄱ>

22) 이 규정 제정의 본래 목적(/목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23) 外國語 表記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汎言語的 규정텍스트를 버리고, 고유어 및 고유어 음운체계로 동화된 전통한자음 표기만 제한적으로 적는 협소한 텍스트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24) 訓民正音 언해본에는 “·첫소·리·ᄅᆞᆯ 어·울·워 ·ᄲᅳᆫ다·면 ᄀᆞᆯ·바·쓰·라 乃:냉終즁ㄱ소·리·도 ᄒᆞᆫ가지·라” <정음12ㄴ>

25) ㉮ 初聲二字三字合用竝書。如諺語·ᄯᅡ爲地。ᄠᅡᆨ爲隻·ᄠᅳᆷ爲隙之類<正音解例21ㄱ>. ㉯ 各自竝書。於諺語혀爲舌而혀爲引。**ᄀᆡ·여**爲我愛人而**ᄀᆡ·여**爲人愛我。**ᄉᆞ·다**爲覆物而**ᄊᆞ·다**爲射之之類<正音解例21ㄱ>. ㉰ 終聲二字三字合用。如諺語ᄒᆞᆰ爲土。·낛爲釣。ᄃᆞᆱ·ᄢᅦ爲酉時之類。其合用竝書。自左而右。初中終三聲皆同<正音解例21ㄴ>

26) ‘기리 혀’를 訓民正音 언해본 식으로 바꾸면, ‘기리 혀’로 적었을 것이다. cf. 各自竝書。於諺語혀爲舌而혀爲引<正音解例21ㄱ>. 또 다른 예로 “·보·라·믈 ᄉᆞ·믈 거·시·니”<訓蒙字會凡例4ㄱ>는, “사·ᄆᆞᆯ 꺼·시·니~사ᄆᆞᆯ 거시니” 정도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두 텍스트에 나타난 竝書法의 規定化 與否, 包括的 活性化 여부 등을 고려할 때, <諺文字母>를 기반으로 하여 <訓民正音> 텍스트로 완전한 체계화를 이룩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특히 韻書(후에 '東國正韻') 편찬의 결과, 全濁音 6자(各自竝書 추가)를 합쳐 <訓民正音> 初聲字母가 23자로 증가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정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3.4. 附書法

텍스트	附書法 內容	비고
訓民正音	·ㅡㅗㅜㅛㅠ。附書初聲之下。 ㅣㅏㅓㅑㅕ。附書於右。<正音4ㄱ>[27]	
諺文字母	初中聲合用作字例 (초성・중성을 합용하여 글자를 만드는 예)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ㄱ <訓蒙字會凡例 3ㄱ>	合字한 예로 보여줌

附書法은 音節의 構成要素 중 하나인 中聲을 初聲의 어느 위치에 붙여서 표기할 것인가를 지정한 규정으로, 音節 合字를 위한 필수적 규정이다. <訓民正音>에는 中聲에 초점을 맞추어 初聲과의 관계에서 中聲의 空間的 위치를 지정하였다. <訓民正音>은 中聲 基本字 11자의 배열순서를 기반으로 圓形/橫形→從形 中聲字로 나누어 제시하고 설명을 붙였다. 규정으로서의 體系性이 질서정연하다.

<諺文字母>도 中聲 基本字 11자의 배열순서를 기반으로 張口(ㅏㅑㅓㅕ)에 이어 縮口(ㅗㅛㅜㅠ), 그리고 地人天(ㅡㅣ・) 순서로 배열하였다. 다만, 둘의 차이가, 전자는 규정하려는 대상인 中聲에 초점을 맞춰 규정화한 반면에, 후자는 初聲字母의 첫 글자 'ㄱ'에 中聲을 合字한 구체적인 예를 적용해 보여줌으로써 학습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는 점이다. 규정의 엄격성으로 판단한다면, <諺文字母>가 <訓民正音>보다 앞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3.5. 成音法

텍스트	成音法 內容	비고
訓民正音	凡字必合而成音。<正音4ㄱ>[28]	약 339억 음절
諺文字母	① 初中聲合用作字例 (초성・중성을 합용하여 글자를 만드는 예)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ㄱ <訓蒙字會凡例 3ㄱ> ② 初中聲終三聲合用作字例 (초성·중성·종성을 합용해 글자 만드는 예) 간肝 갇(笠) 갈(刀) 감(柿) 갑甲 갓(皮) 강江 <訓蒙字會凡例 3ㄴ>	① 176자 ② 1408자 모두 1584자

이 규정은 <訓民正音>에서 音節을 구성하는 大原則으로, 모든 글자[字]는 音節 구성의 基本要素들이 합쳐져야만 音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문맥상 음절의 구성요소가 初・中・終聲임은 짐작할 수 있으나, 오해의 소지는 있는 표현이다.[29] 東國正韻 漢字音은 이 규정에

27) 訓民正音 언해본에는 "・・와 ㅡ와 ㅗ와 ㅜ·와 ㅛ·와 ㅠ·와란 ·첫소·리 아래 브·텨 ·쓰고 ㅣ·와 ㅏ·와 ㅓ·와 ㅑ·와 ㅕ·와란 ·올흔녀·긔 브·텨 ·쓰·라" <정음12ㄴ~13ㄱ>

28) 訓民正音 언해본에는 "믈읫 字·ᄌᆞᆼㅣ 모·로·매 어·우러·사 소·리 : 이·ᄂᆞ·니" <정음13ㄱ>

29) '正音解例篇'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① 대개 음절[字韻]의 핵심은 중성에 있는바, (중성이) 초성・종성과 합하여 소리[음절]를 이룬다[字韻之要。在於中聲。初終合而成音]<正音解例8ㄴ>. ② 초성・중성・종성 세 소리가 합하여 글자[字. 字節]를 이룬다[初中終三聲。合而成字]<正音解例21ㄴ>. 해설 ①

맞지만, 고유어는 音節유형이 '初+中聲' 또는 '初+中+終聲' 등으로도 음절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必>자를 넣은 것은 여러 음절유형을 고려해 모아쓰되 改新漢字音까지를 포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諺文字母>에서는 附書法의 용례로도 해석되는 ① "初中聲合用作字例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ㄱ"와 ② "初中聲終三聲合用作字例" 규정을 추가해 '初+中+終聲'과 같은 유형도 있음을 구체적 사례로써 보여 實用性을 더하고 있다. 音節産出量 면에서 <諺文字母>는 ①의 방법으로 176字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②를 통해 1,408자까지 가능하므로, 합치면 총 1504자의 音節構成이 가능해진다. 借字表記에 비하면 놀라운 數値다. 그러나 <訓民正音>의 규정을 따르면 약 339억字(音節)를 적을 수 있으므로(변정용 2013: 141), <정인지서>에서 표현한 "轉換無窮"이라는 말이 결코 자화자찬이 아님을 실감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두 텍스트가 보여주는 규정의 嚴格性과 簡潔性, 無限한 音節 産出量 등으로 판단해볼 때, <訓民正音>(1446)을 참고해 후대에 그보다 못한 <諺文字母>를 만들었다는 기존의 통설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를 역순으로 놓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다.

3.6. 加點法

텍스트	加點法 內容	비고
訓民正音	(1) 左加一點則去聲。二則°上聲。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正音4ㄱ>[30]	圈點 조항 없음
諺文字母	① 무릇 글자의 음의 높낮이는 모두 방점(傍點)이 있고 없으며 많고 적은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 평성(平聲)은 점이 없고 상성(上聲)은 2점이며 거성(去聲)과 입성(入聲)은 모두 1점이다. 평성은 '애이안(哀而安)'하며, 상성은 '여이거(厲而擧)'하며, 거성은 '청이원(淸而遠)'하며, 입성은 '직이촉(直而促)'하다. 언해(諺解. 언문풀이)도 이와 같다.[31]<범례4ㄱ> ② 무릇 글자음(字音)의 높낮이는 모두 글자(字)의 곁에 점(點)이 있고 없음, 많고 적음으로 기준을 삼을 것이니, 낮은 소리의 글자는 평성(平聲)이니 점(點)이 없고, 길게 끌어서 나중에 들어 올리는 소리의 글자는 상성(上聲)이니 점이 둘이고, 곧고 바로 높은 소리의 글자는 거성(去聲)이니 점이 하나이고, 곧고 빠른 소리의 글자는 입성(入聲)이니 점이 하나다.[32]	傍點 조항
	(2) 또 글자들(여기서는 '漢字')이 본디의 소리[기본성조]를 두고 다른 뜻과 다른 소리[音]로 쓰면[用] 그 달리 쓰는 소리(성조)로 그 글자의 귀(=모서리)에 돌림[圈=권점/동그라미](표시)을 하나니, 예를 들면 "行갈행 평성 본음, 行저자항 평성, 行행적행 거성이므로 [行°]으로 표시한다.[33]	圈點 조항

과 ②를 통해 "合而成音=合而成字"임을 알 수 있다.

30) 訓民正音 諺解本에는 ":왼녀·긔 ᄒᆞᆫ 點:뎜·을 더으면 ·ᄆᆞᆺ 노·픈 소·리·오 點:뎜·이 :둘히·면 上:썅聲셩·이·오[上聲은 처ᅀᅥ·미 ᄂᆞᆺ갑고 乃終이 노픈 소리라] 點:뎜·이 :업스면 平뼝聲셩·이·오[平聲은 ᄆᆞᆺ ᄂᆞᆺ가ᄫᆞᆫ 소리라](중략)[入聲은 ᄲᅧᆯ리 긋ᄃᆞᆫᄂᆞᆫ 소리라] 入·십聲셩·은 點:뎜 더·우·믄 ᄒᆞᆫ가·지로·ᄃᆡ ᄲᅧᆫ·니·라" <정음13ㄴ~14ㄴ>

31) 凡字音高低皆以字傍點之有無多少爲準。平聲無點 上聲二點 去聲入聲皆一點。平聲哀而安 上聲厲而擧 去聲淸而遠 入聲直而促 諺解亦同 <訓蒙字會凡例4ㄱ>

32) 믈읫 ·귿(글)字·ᄌᆞ 音음·의 노·ᄑᆞ·며 ᄂᆞᆺ가·오·미 :다 字·ᄌᆞㅅ 겨:틔 點·뎜·이 이·시·며 :엽(:업)·스·며 하·며 :져·금·으·로 ·보·라·믈 ᅀᅡ(사)·믈 거·시·니 ᄂᆞᆺ가·온 소·릭·옛 字·ᄌᆞ·ᄂᆞᆫ 平평聲셩·이·니 點·뎜·이 :업·고 가·라·혀 :나·죵 들·티·ᄂᆞᆫ 소·릭·옛 字·ᄌᆞ·ᄂᆞᆫ 上:샹/ 聲셩·이·니 點·뎜이 :둘·히·오 ·곧·고 바ᄅᆞ 노·픈 소:릭·옛 字·ᄌᆞ·ᄂᆞᆫ 去·거聲셩·이·니 點·뎜·이 ᄒᆞ나·히·오 곧고 ᄲᅧᆫ른 소·릭·옛 字·ᄌᆞ·ᄂᆞᆫ 入·입聲셩·이·니 點·뎜·이 ᄒᆞ나·히·라 諺:언文문·으·로 사·김ᄒᆞᆫ ·ᄃᆡ ᄒᆞᆫ가·지·리(라) <訓蒙字會凡例4ㄱ-ㄴ> cf. ( ) 속 글자는 오자로 보고 필자가 바로잡은 것임.

<訓民正音>의 加點法은, 成音法으로 만들어진 音節의 글자 왼쪽[左]에 點을 가해서 해당 音節의 聲調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平聲은 無點, 去聲은 1점, 上聲은 2점으로 구분해 나타내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入聲의 경우는 聲調의 실현 양상에 따라 平聲(무점.0점)・上聲(2점)・去聲(1점)과 같은 방법으로 加點하되, 이들(平·上·去聲)에 비해 入聲은 促急함이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하였다.

<諺文字母>는 어떤가? 이 텍스트에도 音의 높낮이에 따라 四聲을 표기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다소 抽象的이기는 하지만 調値에 대한 설명도 갖추어져 있다. 이것이 <訓民正音> 텍스트에는 없는 대신 '正音解例편'의 <合字解>(22ㄱㄴ)에 五行思想을 곁들여 해설되어 있다. <諺文字母>가 먼저 만들어지고, 후에 <訓民正音>에서 傍點法에 관한 기본골격만 규정화하고, 그 調値에 관한 세부 내용은 수정하여 해례본(1446)의 <合字解>에 配分・解說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와 반대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諺文字母>가 <訓民正音>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圈點에 관한 조항이다. 후자에는 없는 조항인데, 圈點法은 聲調에 따라 漢字의 의미 또는 音이 本音・本義와 다른 것을 변별하기 위해 漢字의 네 귀퉁이에 圈點['돌임=돌림']을 가하는 방법이다. <平上去入定位之圖>라는 그림 자료로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諺文字母> 텍스트에서 加點法은 "成音法으로 만들어진 音節의 글자 왼쪽[左]에 점을 찍거나, 漢字의 音이 本音과 달라 의미가 달라질 때 漢字의 네 귀에 圈點을 찍어 聲調를 표시하는 방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중요한 사실로서, <諺文字母>가 <訓民正音>보다 앞서 만들어진 텍스트라는 유력한 증거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龍飛御天歌(1445~1447.2.)와 해례본(1446.9.)은 漢字에 圈點을 표시한 대표적인 문헌이다. 1443년 12월 '諺文' 창제와 함께 <諺文字母>가 만들어졌으며, 1446년 <訓民正音>이 제정되기 전에 위의 두 문헌 제작이 시작된 관계로, 여기에 <諺文字母>의 圈點 규정 흔적이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訓民正音> 텍스트에서 圈點 조항이 삭제된 것은, 漢字와 한자음의 한글표기를 일대일로 竝記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34]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諺文字母>의 運用規定은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未備・不完全, 制限的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訓民正音>은 完備, 完全無缺, 그리고 거의 無制限的으로 開放된 體系的 규정들로 구조화되어 있다.[35] 著作의 순서를 <諺文字母>에서 시작해 <訓民正音>으로 계승・발전되었다고 가정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 상황을 가정하면 매우 부자연스럽고,[36] 특히 그럴 만한 國語學史的 動因을 찾기가 어렵다. 기존의 거의 모든 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합리적・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역순으로 놓고 검증해보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았다.

4. 결론과 전망

33) 또 字·ᄌᆞ·ᄃᆞᆯ·히 본·딋 소·릐 두·고 다른 ·ᄠᅳᆫ 다른 소·릐·로 ·ᄡᅳ면(·ᄡᅳ면) 그 달·이 ·ᄡᅳ·ᄂᆞᆫ(·ᄡᅳ·ᄂᆞᆫ) 소·릐·로 그 ·ᄌᆞᆺ귀·예 돌·임 ·ᄒᆞ·ᄂᆞ니 行녈힝 平평聲셩本·본音음 行져·제항 平평聲셩 行 :힝·뎍:힝 去:거聲셩 <訓蒙字會凡例 4ㄴ>

34) 圈點(또는 圈聲/圈發)은 崔世珍의 訓蒙字會(1527)에서도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철저하지는 않다. <訓民正音> 규정에서 권점(권성)을 사용한 경우, 언해본에서는 해당 漢字에 한글로 한자음(방점도 표시)을 병기하였다.

35) 連書法의 제정, 竝書法, 終聲法 등의 용법 확대, 運用規定의 세분화와 규모의 확대 등을 말하는 것이다.

36) 蘇合香을 버리고 蟾蜍의 丸을 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글에서는 '諺文(訓民正音)'의 두 체계 <訓民正音>과 <諺文字母>를 비교・분석하되, 특히 訓蒙字會(1527)에 실린 <諺文字母>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 구조를 분석, 內的 體系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1446년 <訓民正音> 텍스트와의 先後 영향관계, 이 텍스트의 原著者와 著作年代를 추정해보고, 訓蒙字會에 실린 <諺文字母> 텍스트의 國語學史上의 座標를 설정해보고자 하였다. 訓民正音通史의 올바른 기술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두 텍스트의 字母規定과 運用規定을 분석해 얻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요약한다.

4.1. 字母規定

初聲規定 분석 결과, <諺文字母> 텍스트는 27字母體系[초성16자, 종성8자, 중성11자]로, 固有語 및 固有語 音韻體系에 동화된 대로의 漢字音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한편, 해례본(1446)의 공시문인 <訓民正音> 텍스트는 두 가지 層位에서 작성되었다. 文字論的 層位로는 28字母體系[초성17자, 중성11자, 종성17자]로, 音韻論的 層位로는 여기에 初聲의 全濁 6字를 합쳐 23字母와 중성 11자 등 34字母체계를 '訓民正音' 즉 國家標準音으로 制定・公布한 것인데, 固有語와 外來語的 요소의 改新漢字音[후에 '東國正韻音']까지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諺文字母>를 기반으로 <訓民正音>에서 正音[국가 표준음]의 제정・공포까지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그 선후 관계는 자명해진다.

이 글에서는 두 텍스트의 對照・比較를 통해 <諺文字母>의 原著者와 著作年代를 확증할 만한 증거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諺文字母>의 初聲 排列順序는, 초성자 제자 목록을 五音(牙/舌/脣/齒/喉音)의 순서에 따라 初聲字母 16자를 '制字之始 ⇒ 1차(因聲加畫字)⇒ 2차(非因聲加畫字)' 순서로 배열하고, 그 바탕 위에 ① 初聲終聲通用八字, ② 初聲獨用八字를 각각 뽑아 그대로 초성자모 순서로 정하였다. 이런 순서는 '諺文'의 創制者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코드(code)로서, 이 排列順序를 정한 사람이 바로 <諺文字母> 텍스트의 原著者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옛이응 'ㆁ'[ŋ]을 牙音이 아니라 喉音(ㅇ)에서 制字하게 된 배경 설명이 주목된다. <諺文字母>의 설명 내용을 해례본(1446)의 <制字解>에 적극 수렴하여, 그 制字方法의 妥當性과 不可避性에 대해 적극적으로 擁護・代辯, 補充 解說하고 있다. 이것은 <諺文字母>의 原著者가 정인지 등보다는 상위자인 君王[世宗]이라는 확증할 만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해례본(1446)을 참고해 후대에 누군가가 요약・정리해 <諺文字母> 텍스트를 만들었다는 기존의 통설은 그럴 만한 動因을 찾기 어려워 신뢰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中聲規定과 終聲規定의 構造를 살펴보았다. 2.2. 中聲規定에서 두 텍스트 모두 중성 基本字를 11자로 정하였다. <訓民正音>에서는 性理學的・聲韻學的 관점에서 '制字之始(天地人)⇒ 初出字⇒ 再出字' 순서로 배열되었다. 반면에 <諺文字母>에서는 음성학적인 기준에 따라 '張口⇒縮口⇒ 地人天' 순서로 배열하여, 순서와 관점이 아주 다르다.

2.3의 終聲規定 분석 결과, <諺文字母>에서는 "初聲終聲通用八字"를 일반적으로 "초성자와 종성자 8자는 두루 쓴다."라고 풀이해 '종성 표기규정'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글자모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두루 사용한다."는 뜻의 '종성 制字에 관한 규정'의 의미까지 내포된 것으로 해석해야 온당할 것이다. 이것은 1446년 <訓民正音>의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규정의 萌芽라 할 수 있다. <訓民正音>에서 이 규정을 制定함에 따라 終聲字를 '초성자17자+@'에 해당하는 글자까지 거의 무한대로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그것은 1444년 2월 16일부터 추

진된 '韻會諺譯'(1444.2.16.)과 洪武正韻譯訓 사업 과정에서 이 규정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 규정 또한 <諺文字母>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 표기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것을 기반으로 1446년 9월에 <訓民正音> 텍스트로 확대・개편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해준다.

4.2. 運用規定

<訓民正音>과 <諺文字母>의 運用規定을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訓民正音> 텍스트에는 終聲法을 비롯해 총 6가지 방법을 마련해 언어의 문자화를 위한 완벽한 규정을 갖추었다. 그러나 <諺文字母> 텍스트에는 終聲法(8종성)・附書法・成音法(成字法)・加點法 등만 겨우 마련되어 있을 뿐, 連書法은 아예 없고, 竝書法은 없기는 하지만 加點法(傍點 조항) 예시문에 合用竝書만 제한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모두 5개 運用規定을 가진 규정으로, 固有語 및 固有語 音韻體系에 동화된 대로의 傳統漢字音 표기를 원칙으로 한 결과다. 특이한 것은, 加點法에 傍點과 圈點의 두 조항이 구비돼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龍飛御天歌(1445~1447.2.)와 解例本(1446.9.)의 漢字에 圈點을 표시한 원천 규정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사실도 <訓民正音>보다 <諺文字母>가 선행한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증거라 하겠다.

둘째, 1446년의 <訓民正音> 텍스트에는 모두 6개 규정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諺文字母>와 크게 다른 점은, 終聲法(17자+@), 連書法(추가), 竝書法(각자병서 추가), 附書法, 成音法, 加點法(圈點 조항 삭제) 등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방법의 추가 제정 및 완벽한 體系化는 주로 1444년 2월 16일부터 시작된 "諺文으로 韻會를 飜譯"[以諺文譯韻會]한 사업에 따른 결과로서, <諺文字母> 텍스트의 著作年代가 1443년 12월부터, 1446년 9월 <訓民正音>보다는 훨씬 앞선 시기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통설처럼 보게 되면, 완벽한 규정에서 결여된 불완전한 규정화로의 제작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4.3. 課題와 展望

訓民正音 硏究는 1940년에 『訓民正音』 解例本이 발견・소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금년이 訓民正音 발견 81주년이 되는 해다. 오늘날에는 15, 16세기 한글문헌도 거의 모두 공개되어 訓民正音의 原典 및 實用의 역사를 연구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었다.

한글의 두 체계 <訓民正音>과 <諺文字母>의 內的 構造를 분석하여 둘의 先後 영향관계, 原著者와 著作年代, 그리고 <諺文字母>의 國語學史上 座標가 밝혀져야 訓民正音 使用의 歷史인 "訓民正音通史" 기술이 정립될 수 있다. 두 텍스트의 構造 比較・分析을 통해, <諺文字母> 텍스트는 1443년 12월 世宗의 '諺文' 창제와 함께 만들어졌으며, 그 후 추진한 國語學史的 事業의 결과를 수렴하여 <諺文字母>를 더욱 확대・개편・보완하여 1446년 9월에 새로운 체계의 <訓民正音> 텍스트로 부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世宗實錄 등 歷史記錄 및 국어사자료와의 整合性 검토를 통해 <諺文字母> 텍스트의 원형을 재구하고, 적용된 문헌자료를 폭넓게 발굴하는 정밀화 작업이 요구된다.

우리는 UNESCO 세계기록유산 『訓民正音』 解例本을 소유한 자랑스러운 文化民族이다. <訓民正音>과 <諺文字母> 두 텍스트의 正體를 밝혀 "訓民正音通史"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이 시대 國語學者에게 부여된 義務이자 歷史的 召命이라고 믿는다.(☆)[37]

37) "호신불호학(好信不好學) 기폐야적(其蔽也賊)": [믿기만을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사회의 적으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강신항(2003),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출판부.

강창석(2014), 언문자모의 작성 주체와 시기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 사회』 22,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27~52.

김무림(1999), 『홍무정운역훈의 연구』, 월인.

김주필(2009), 언문자모의 반절적 운용과 반절표의 성격, 『한국학논총』 32,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491~518.

김진규(1991), 훈몽자회의 引. 凡例 소고: 훈민정음 해례와 훈몽자회범례의 음소배열을 중심으로, 『논문집』 29, 공주대학교, 67~86.

남광우(1956), 자모배열에 대하여, 『한글』 119, 한글학회, 27~32.

남풍현(1980),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그 의의, 『동양학』 10,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365~372.

도수희(1971), 한글 자모 명칭의 연원적 고찰, 『어문연구』 7, 충남대어문연구회, 109~126.

방종현(1948), 『훈민정음통사』, 일성당서점.

변정용(2013), 훈민정음 원리에 입각한 정보교환 한글 0부호체계 평가, 2013년 훈민정음학회 『제2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훈민정음학회, 138~148.

성원경(1983), 훈민정음 해례 중 '韻書疑與喩多相混用' 攷, 추강 황희영박사송수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한국어 계통론 훈민정음 연구』, 집문당, 275~294.

안병희(1985),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방학지』 46·47·48, 동방학회, 793~821.

안병희(1992), 「국어사자료연구」, 문학과지성사.

안병희(2009), 「국어사 문헌 연구」, 신구문화사.

왕문용(1998), 한글 字母명칭의 유래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96, 국어교육학회, 221~237.

유창균(1966),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진단학보』 29·30, 진단학회(이기문 편(1977), 『국어학논문선⑦』 문자, 민중서관, 153~179. 재수록).

유형선(2009),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에 관한 연구, 『순천향인문과학논총』 23,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75~102.

이기문(1963),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연구원.

이기문(1971), 『훈몽자회연구』, 서울대출판부.

이기문(1972), 『국어음운사연구』, 한국연구원(1977. 탑출판사).

이기문(1974),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몇 문제, 『국어학』 2, 국어학회, 1~15.

이기문(1976), 최근의 훈민정음 연구에서 제기된 몇 문제, 『진단학보』 42, 진단학회, 187~190.

이기문 편(1977), 『국어학논문선⑦』 문자, 민중서관.

이돈주(1988), 훈민정음의 중국음운학적 배경,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198~237.

이돈주(1988), 훈민정음의 해설,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1~40.

이동림(1970), 『동국정운연구』, 동국대국어국문학연구실.

이동림(1973), 언문자모 속소위 반절이십칠자 책정근거, 『양주동박사 고희기념논문집』, 탐구당, 113~144.

이동림(1974), 훈민정음 창제경위에 대하여: 속소위반절이십칠자와 상관해서,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59~66.

이동림(1975), 훈민정음의 창제경위에 대하여: ‘언문자모이십칠자’는 최초원안이다, 『국어국문학논문집』 9·10,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7~22.
이동림(1993), 국문자모의 두 가지 서열에 대한 해명, 성원경박사화갑기념『한중음운학논총(Ⅰ)』, 논총간행위원회, 1~30.
이동림(1993), 동국정운 초성 자모 ‘23자’의 책정과 그 해석, 『국어학』 23, 국어학회, 1~39.
이상규 주해(2013), 『훈민정음통사(방종현 원저)』, 올재.
이상혁(2004), 『조선 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역사적 변천』, 역락.
이승후(2003), 한글 자모의 명칭에 대하여: 자모명칭에 대한 인식정확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6, 한국국어교육학회, 211~236.
임용기(2018), 국어 음절 짜임새와 훈민정음, 『한국어사와 중국어사의 대화』, 연세대학교, 114~166.
장주현(1987), 훈몽자회의 어학적 연구: 언문자모를 중심으로,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전광현(1989), 국어 字母의 배열 순서에 대하여, 『국어생활』 18 (가을), 국립국어연구원, 51~62.
정우영(2005), 국어 표기법의 변화와 그 해석, 『한국어학』 26, 한국어학회, 293~326.
정우영(2014가), 월인천강지곡의 국어사적 가치와 문헌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 『장서각』 32, 한국학중앙연구원, 11~47.
정우영(2014나), 훈민정음 해례본의 ‘예의편’ 구조와 ‘해례편’과의 상관관계, 『국어학』 72, 국어학회, 103~153.
정우영(2018), ≪훈민정음≫ 해례본 낙장의 ‘병서행’ 복원에 대한 재론, 『국어학』 88, 국어학회, 33~73.
최현배(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허철구(2008), 한글 자모순의 성립과정과 과제, 『사림어문연구』 18, 사림어문학회, 263~276.
홍기문(1946), 『정음발달사』, 서울신문사출판국.
홍윤표(2013), 한글 자모 배열 순서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한글 이야기 1 : 한글의 역사』, 태학사, 37~57.
http://stdweb2.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 04.30. 웹사전)
http://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